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5. 9.

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 9. 16.

기획재경위원회

1. 검토과정

- 안건명: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제출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 제출일자: 2025. 9. 3.(수)
- 회부일자: 2025. 9. 3.(수)
- 검토기간: 2025. 9. 4.(목) ~ 9. 10.(수)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2조, 제145조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8조, 제41조, 제45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

3. 추경예산안 편성요인

가. 세입예산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영
- 추경성립전 사업의 국·시비, 특별교부세 등 의존수입 세입 반영

나. 세출예산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국·시비보조금에 따른 구비부담분 반영
- 추경성립전 집행사업 반영

4. 추경예산안 개요

가. 세입·세출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A)	제2회 추경예산(B)	증감 (A-B)	증감률 (%)	비 고
계	1,331,882	1,221,587	110,295	9.03	
일반회계	1,315,814	1,205,519	110,295	9.15	
특별회계	16,068	16,068	0	0	
의료급여기금	2,252	2,252	0	0	
지하수관리	76	76	0	0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91	91	0	0	
주차장	13,649	13,649	0	0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정규모는 1,331,882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10,295백만원 증가
-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1,315,814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10,295 백만원 증가
-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16,068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없음.

나. 일반회계 편성현황

1)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A)	제2회 추경예산(B)	증감 (A-B)	증감률(%)
계	1,315,814	1,205,519	110,295	9.15
지방세수입	158,114	158,114	0	0
세외수입	46,538	46,538	0	0
지방교부세	22,043	20,770	1,273	6.13
조정교부금등	97,951	97,951	0	0
보 조 금	922,072	821,046	101,026	12.3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9,096	61,100	7,996	13.09

- 지방교부세는 22,043백만원이며 상반기 특별교부세 정기교부분 및 재난 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내역 반영으로 1,273백만원 증가
- 보조금은 922,072백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 반영으로 101,026백만원 증가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69,096백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496백만원, 예수금 수입 7,500백만원을 반영하여 총 7,996백만원 증가

- 주요 국비 사업 증감 내역

부 서	내 역	증감액 (천원)
일자리지원과	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100,000
경제지원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92,350,440
어르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601,501
체육청소년과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250,005

- 주요 시비 사업 증감 내역

부 서	내 역	증감액 (천원)
일자리지원과	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100,000
경제지원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5,141,980
복지정책과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특별위로금 지원	2,500
어르신장애인과	우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 지원	8,981
	폭염대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보양식 지원	18,800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사업	100,0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257,788
체육청소년과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53,573
건축과	반지하주택 물막이설비 및 수방자재 확보 지원사업	40,300

2)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제3회 추경예산(A)	제2회 추경예산(B)	증감 (A-B)	증감률(%)
계	1,315,814	1,205,519	110,295	9.15
행정운영경비	138,175	138,175	0	0
인력운영비	131,435	131,435	0	0
기본경비	6,740	6,740	0	0
사업예산	1,155,190	1,045,391	109,799	10.5
보조사업	992,992	883,193	109,799	12.4
자체사업	162,198	162,198	0	0
예비비 및 재무활동	22,449	21,953	496	2.26

- 행정운영경비는 138,175백만원이며 제2회 추경대비 변동사항 없음.
- 보조사업은 992,992백만원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등으로 109,799백만원 증가
- 자체사업은 162,198백만원이며 제2회 추경대비 변동사항 없음.
- 예비비 및 재무활동경비는 22,449백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총 496백만원 증가

다. 특별회계 편성현황

1)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A)	제2회 추경예산(B)	증감 (A-B)	증감률 (%)
계	16,068	16,068	0	0
의료급여기금	2,252	2,252	0	0
지하수관리	76	76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91	91	0	0
주차장	13,649	13,649	0	0

○ 특별회계 세입 변동사항 없음.

2)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A)	제2회 추경예산(B)	증감 (A-B)	증감률(%)
계	16,068	16,068	0	0
행정운영경비	1,427	1,427	0	0
인력운영비	1,362	1,362	0	0
기본경비	65	65	0	-
사업예산	6,455	10,455	△4,000	△38.26
보조사업	2,232	2,232	0	0
자체사업 (예비비)	4,223 (2,203)	8,223 (6,273)	△4,000 (△4,070)	△48.64 (64.88)
재무활동	8,186	4,186	4,000	95.56

○ 자체사업은 송현1동 4공영주차장 조성공사 70백만원 증액 및 주차관련 시설물 정비·확충(예비비) 4,070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4,000백만원 감소

○ 재무활동은 기금 예탁금으로 4,000백만원 증가

5.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검토

가. 일반회계 편성현황

1) 세입예산

(단위: 천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A)	제2회 추경예산(B)	증 감	
			증 감 액 (A-B)	증감률
계(구전체)	1,315,814,707	1,205,519,454	110,295,253	9.15%
기획재경위원회 합계	463,447,166	356,253,599	107,193,567	30.09%
청렴감사실	1,225,505	1,225,505	0	0.00%
기획경제국 소계	260,244,852	153,051,285	107,193,567	70.04%
기획전략과	145,568,795	138,068,795	7,500,000	5.43%
디지털정보과	3,013,993	3,013,993	0	0.00%
홍보미디어과	1,400	1,400	0	0.00%
일자리지원과	7,036,957	4,835,810	2,201,147	45.52%
경제지원과	104,623,707	7,131,287	97,492,420	1,367.11%
행정교육국 소계	201,976,809	201,976,809	0	0.00%
총 무 과	864,955	864,955	0	0.00%
평생교육과	2,484,866	2,484,866	0	0.00%
종합민원과	738,196	738,196	0	0.00%
세 무 과	158,254,919	158,254,919	0	0.00%
징 수 과	37,556,854	37,556,854	0	0.00%
회 계 과	2,077,019	2,077,019	0	0.00%

(※참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1 ~ 135쪽)

-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 중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은 구 전체 예산액의 35.22%인 4,634억 4,716만 6천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071억 9,356만 7천원이 증가(30.09%)하였음.

【 부서별 증가 내역 】

① 기획전략과: 75억원 증액(5.43% 증가)

▷ 주요 증감내역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재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7,500,000천원 증액	

② 일자리지원과: 22억 114만 7천원 증액(45.52% 증가)

▷ 주요 증감내역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재원)
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200,000천원 증액	국·시비
마을기업 육성사업 물품 매각대금 반환금	1,147천원 신규	균특·시비

③ 경제지원과: 974억 9,242만원 증액(1,367.11% 증가)

▷ 주요 증감내역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재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추경성립전 포함)	97,492,420천원 신규	국·시비

2) 세출예산

(단위: 천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A)	제2회 추경예산(B)	증 감	
			증 감 액 (A-B)	증감률 (%)
계 (구 전체)	1,315,814,707	1,205,519,454	110,295,253	9.15%
기획재경위원회 합계	291,454,489	184,260,922	107,193,567	58.17%
청렴감사실	354,277	354,277	0	0.00%
기획경제국 소계	151,704,498	44,510,931	107,193,567	240.83%
기획전략과	17,135,917	17,135,917	0	0.00%
디지털정보과	7,861,179	7,861,179	0	0.00%
홍보미디어과	1,208,222	1,208,222	0	0.00%
일자리지원과	9,911,709	7,710,562	2,201,147	28.55%
경제지원과	115,587,471	10,595,051	104,992,420	990.96%
행정교육국 소계	139,395,714	139,395,714	0	0.00%
총 무 과	89,603,333	89,603,333	0	0.00%
평생교육과	15,320,714	15,320,714	0	0.00%
종합민원과	586,586	586,586	0	0.00%
세 무 과	1,113,733	1,113,733	0	0.00%
징 수 과	830,323	830,323	0	0.00%
회 계 과	2,566,849	2,566,849	0	0.00%
동	29,374,176	29,374,176	0	0.00%

(※참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1 ~ 135쪽)

-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중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은 구 전체 예산액의 22.15%인 2,914억 5,448만 9천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071억 9,356만 7천원이 증가(58.17%)하였음.

【 부서별 증가 내역 】

① 일자리지원과: 22억 114만 7천원 증액(28.55% 증가)

▷ 주요 증감내역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재원)
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200,000천원 증액	국·시비
마을기업 육성사업 물품 매각대금 반환금	1,147천원 신규	균특·시비

② 경제지원과: 1,049억 9,242만원 증액(990.96% 증가)

▷ 주요 증감내역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재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추경성립전 포함)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접수 인부임	198,800천원 신규	국·시·구비
· 민생회복 소비쿠폰 홍보비	6,000천원 신규	
· 민생회복 소비쿠폰 장비 임차비	23,200천원 신규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104,764,420천원 신규	

6. 검토 의견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경성립전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의존수입의 세입 반영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 9.15% 증가 되었음.
-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액규모는 1,071억 9,357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증액규모(1,103억원)의 97.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요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75억원, 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2억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물품 매각대금 반환금 11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974억 9,242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규모는 1,071억 9,357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증액규모(1,103억원)의 97.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요인은 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2억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물품 매각대금 반환금 11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1,049억 9,242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음.
-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 둔화 지속,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재원 마련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바,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한 예산 집행이 요구됨. 위원회에서는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산출근거의 적정성, 사업효과 등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

【참 고 자 료】

일반회계 세출예산 위원회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증 감	증감률
계	1,315,814,707	1,205,519,454	110,295,253	9.15%
운 영 위 원 회	4,766,453	4,766,453	0	0.00%
기획재경위원회	291,454,489	183,758,922	107,193,567	58.17%
복지문화위원회	908,138,546	906,650,160	1,988,386	0.22%
도시환경위원회	111,455,219	110,343,919	1,113,300	1.01%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증 감	증감률
계	1,315,814,707	1,205,519,454	110,295,253	9.15%
의회사무국	4,766,453	4,766,453	0	0.00%
청렴감사실	354,277	354,277	0	0.00%
기획전략과	17,135,917	17,135,917	0	0.00%
디지털정보과	7,861,179	7,861,179	0	0.00%
홍보미디어과	1,208,222	1,208,222	0	0.00%
일자리지원과	9,911,709	7,710,562	2,201,147	28.55%
경제지원과	115,587,471	10,595,051	104,992,420	990.96%
총 무 과	89,603,333	89,603,333	0	0.00%
평생교육과	15,320,714	15,320,714	0	0.00%
종합민원과	586,586	586,586	0	0.00%
세 무 과	1,113,733	1,113,733	0	0.00%
징 수 과	830,323	830,323	0	0.00%
회 계 과	2,566,849	2,566,849	0	0.00%
복지정책과	162,919,150	162,916,650	2,500	0.00%
어르신장애인과	436,981,103	435,298,795	1,682,308	0.39%
아동가족과	188,504,819	188,504,819	0	0.00%
행복나눔과	60,798,578	60,798,578	0	0.00%
위 생 과	1,759,710	1,759,710	0	0.00%
문화관광과	11,254,803	11,254,803	0	0.00%
체육청소년과	12,064,972	11,761,394	303,578	2.58%
보건행정과	17,357,996	17,357,996	0	0.00%
건강증진과	15,652,312	15,652,312	0	0.00%
성서보건지소	845,103	845,103	0	0.00%
교통행정과	2,891,000	2,691,000	200,000	7.43%
주차관리과	200,925	200,925	0	0.00%
청 소 과	56,370,037	56,370,037	0	0.00%
기후환경과	3,245,450	3,245,450	0	0.00%
도시디자인과	3,603,350	3,603,350	0	0.00%
공원녹지과	19,870,535	19,070,535	800,000	4.19%
안전도시과	3,144,853	3,071,853	73,000	2.38%
건 설 과	17,217,572	17,217,572	0	0.00%
건 축 과	1,800,225	1,759,925	40,300	2.29%
토지정보과	3,111,272	3,111,272	0	0.00%
동	29,374,176	29,374,176	0	0.00%

일반회계 세출예산 동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증 감	증감률
계	29,374,176	29,374,176	0	0.00%
성 당 동	1,364,356	1,364,356	0	0.00%
두류1·2동	1,288,747	1,288,747	0	0.00%
두류 3동	838,900	838,900	0	0.00%
본 리 동	1,158,418	1,158,418	0	0.00%
감 삼 동	1,229,812	1,229,812	0	0.00%
죽 전 동	1,048,888	1,048,888	0	0.00%
장 기 동	1,103,815	1,103,815	0	0.00%
용산 1동	1,302,563	1,302,563	0	0.00%
용산 2동	1,082,204	1,082,204	0	0.00%
이곡 1동	1,090,612	1,090,612	0	0.00%
이곡 2동	1,213,850	1,213,850	0	0.00%
신 당 동	1,873,287	1,873,287	0	0.00%
월성 1동	1,476,378	1,476,378	0	0.00%
월성 2동	1,478,687	1,478,687	0	0.00%
진 천 동	1,802,053	1,802,053	0	0.00%
유 천 동	1,109,004	1,109,004	0	0.00%
상인 1동	1,300,226	1,300,226	0	0.00%
상인 2동	1,208,913	1,208,913	0	0.00%
상인 3동	1,390,079	1,390,079	0	0.00%
도 원 동	1,275,374	1,275,374	0	0.00%
송현 1동	1,352,717	1,352,717	0	0.00%
송현 2동	1,432,329	1,432,329	0	0.00%
본 동	952,964	952,964	0	0.00%

예산 분야별 주요사업 증감액 현황

(일반 + 특별회계)

1 사회복지분야 8,560억원 (16.8억원 증액)

부서명	사업명	증감액(천원)
복지정책과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특별위로금 지원(시)	2,500
어르신장애인과	장동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세)	200,000
	우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 지원(시)	8,981
	폭염대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보양식 지원(시)	18,800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사업(시)	100,0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국·시)	859,289
-	국·시비보조금반환금	495,238

2 일반공공행정분야 546억원 (22억원 증액)

부서명	사업명	증감액(천원)
일자리지원과	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시)	2,200,000

3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56억원 (8.4억원 증액)

부서명	사업명	증감액(천원)
공원녹지과	송현공원 재정비 사업(세)	300,000
	학산공원 둘레길 정비사업(세)	500,000
건축과	반지하주택 물막이설비 및 수방자재 확보 지원사업(시)	40,300

4 문화 및 관광분야 208억원 (3억원 증액)

부서명	사업명	증감액(천원)
체육청소년과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기·시)	303,578

5 교통 및 물류분야 207억원 (2억원 증액)

부서명	사업명	증감액(천원)
교통행정과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세)	200,000

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1,142억원 (1,050억원 증액)

부서명	사업명	증감액(천원)
경제지원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국·사·구)	104,992,420

7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1억원 (0.7억원 증액)

부서명	사업명	증감액(천원)
안전도시과	폭염대비 폭염예방물품 구입(세)	73,000

2025년도 제3회 추경성립전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부서	사업명	통계목	제3회 추경예산	추경성립전		
				경정액	기정액	증감액
경제 지원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접수 인부임(추경성립전 포함)	101-04	198,800	178,920	0	178,920
	민생회복 소비쿠폰 홍보비 (추경성립전 포함)	201-01	6,000	5,400	0	5,400
	민생회복 소비쿠폰 장비 임차비 (추경성립전 포함)	201-01	23,200	20,880	0	20,880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추경성립전 포함)	301-01	104,764,420	92,145,240	0	92,145,240
복지 정책과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특별위로금 지원(추경성립전)	301-02	127,000	127,000	124,500	2,500
어르신 장애인과	폭염대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보양식 지원(추경성립전)	301-02	18,800	18,800	0	18,800
체육 청소년과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추경성립전 포함)	301-01	303,578	250,005	0	250,005
안전 도시과	폭염대비 폭염예방물품 구입 (추경성립전)	201-01	73,000	73,000	0	73,000
건축과	이동식 수방자재 확보(추경성립전)	201-01	4,000	4,000	0	4,000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경성립전)	401-01	36,300	36,300	0	36,300

2025년도 제3회 추경 주요 투자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기정액	경정액	증감액	비고
일자리 지원과	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시비)	2,960,000	5,160,000	2,200,000	
경제지원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국시·구비)	0	104,992,420	104,992,420	
복지정책과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특별위로금 지원(시비)	124,500	127,000	2,500	
어르신 장애인과	장동경로당 리모델링 사업(특교세)	0	200,000	200,000	*특교세 2억
	우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 지원 (시비)	207,695	216,676	8,981	
	폭염대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보양식 지원(시비)	0	18,800	18,800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사업(시비)	0	100,000	100,0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국시비)	5,854,629	6,713,918	859,289	
체육 청소년과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시비·기금)	0	303,578	303,578	
교통행정과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특교세)	0	200,000	200,000	*특교세 2억
주차관리과	송현1동 4공영주차장 조성공사(구비)	0	70,000	70,000	
공원녹지과	송현공원 재정비 사업(특교세)	0	300,000	300,000	*특교세 3억
	학산공원 둘레길 정비사업(특교세)	0	500,000	500,000	*특교세 5억
안전도시과	폭염대비 폭염예방물품 구입(특교세)	0	73,000	73,000	*특교세 0.7억
건축과	반지하주택 물막이설비 및 수방자재 확보 지원사업(시비)	0	40,300	40,300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 38조제2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